

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 결과... 93건 불법하도급 적발

-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, 무등록·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
총 173개사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중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(5.23.~6.21.)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(진행률 27.4%)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(적발률 41%)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,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하였다.
-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*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,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,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.
 - * 관할관청(지자체)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누리집(<http://kiscon.net>)을 통해 해당 건설사 공개, 보도자료 배포 예정
-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(46%)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(37%)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,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(57%)에서 적발률이 높았다.
-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(22%) 보다 건축공사 현장(51%)에서 적발률이 높았고,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,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”고 하면서,
 - “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,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팀 장	조숙현 (044-201-3518)
	공정건설지원팀	담당자	사무관	신기표 (044-201-3572)

참고 1

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 결과(5.23.~6.21.)

□ 단속결과 개요

- (단속기간) '23. 5. 23. ~ 6. 21. < 30일 >
- (단속현장) 총 139개 현장 < 진행률 27.4% > * 총 508개 현장 단속 예정
- (적발현장) 57개 현장 < 적발률 41.0% >
- (적발업체) 총 80개社 < 원청 56개社, 하청 24개社 >
- (적발건수) 총 93건
 - 무자격자*에 대한 하도급 66건 < 전체 단속 건수의 71.0% >
 - * 건설업 무등록업체 46개社, 해당 공종 무자격 업체 22개社
 -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재하도급 27건

□ 단속결과 분석 주요내용

- (공사규모별) 100억원 ~ 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(48.9%)이 가장 높은 반면, 1,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

< 공사금액 구간 별 불법하도급 적발률(현장 기준) >

구분	100억원 미만	100억원~300억원	300억원~1000억원	1,000억원 이상
단속	36	45	44	14
적발	14	22	17	4
적발률	38.9%	48.9%	38.6%	28.6%

- (발주자별) 민간공사(46.0%) 적발률이 공공보다 높으며, 공공의 경우 지방공기업(57.1%)의 적발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자체(38.6%) 순

< 발주기관 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현황(현장기준) >

구분	민간	공공	국가기관	공기업	지자체	지방공기업	교육기관
단속	50	89	5	16	57	7	4
적발	23	34	1	6	22	4	1
적발률	46.0%	37.1%	20%	37.5%	38.6%	57.1%	25.0%

- (공종별) 건축공사 현장의 적발률이 토목공사보다 높으며*, 건축공사 중에서는 가시설공사(26.8%), 비계공사(19.5%) 순

* (건축) 80개 중 41개 적발(51.3%) / (토목) 49개 중 11개 적발(22.4%)

< 건축공사 주요 불법하도급 시공업체 >

가시설공사	장비업체	무자격자	자재업체	비계공사	무자격자	자재업체	비계팀장
11	5(45.5%)	3(27.3%)	3(27.3%)	8	5(62.5%)	2(25.0%)	1(12.5%)

- (시설물별)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가장 높으며 (70.0%), 그 다음으로는 공공건축물(64.3%), 공동주택(42.1%) 공사 순

< 적발률 상위 시설물별 발주자 현황 >

구분		총	지자체	공기업	국가	민간
공장	단속	10	-	1	1	8
	적발	7	-	1	0	6
	적발률	70.0%	-	100%	-	-
공공건축물	단속	28	22	4	2	-
	적발	18	14	3	1	-
	적발률	64.3%	63.6%	75.0%	50.0%	-
공동주택	단속	38	-	4	-	34
	적발	16	-	3	-	13
	적발률	42.1%	-	75.0%	-	38.2%

① 공공건축물 불법재하도급(수도권)

-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*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(건설업 미등록)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

* 지반을 뚫고 시멘트(주입재) 등을 주입하여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

⇒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② 비계공사 불법하도급(충청권)

- 원청인 C는 비계공사*를 석공사에 포함하여 D(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 등록)에게 불법으로 하도급

*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, 작업원의 통로,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공사

⇒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

③ 장비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(전라권)

- 하청인 E는 천공기* 장비 임대업체인 F(건설업 미등록)에게 흙막이 공사(토공사)를 불법으로 재하도급

* 거대한 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

⇒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F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④ 자재업체에게 불법하도급(경상권)

- 원청인 G는 자재 납품업체인 H(건설업 미등록)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

⇒ G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H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